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2. 07. 13

발의의원 : 김태우·류종우
박종필·이성오
이재숙·전경원
정일균·하병문
의원(8명)

1. 개정 이유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을 통폐합하여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안 전반)

- (목적) 대구광역시 평생교육 및 청소년활동의 진흥과 위기 청소년

보호 및 복지향상, 여성·가족 정책개발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추가함

- (명칭)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다.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공유재산의 대부,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3. 참고 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붙임)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함”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평생교육 및 청소년활동의 진흥과 위기 청소년 보호 및 복지향상, 여성·가족 정책개발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한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사회서비스원)”을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사업) 대구행복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2.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 나.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센터에 관한 사업
- 다.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 라.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 마. 평생교육관련 통계조사
- 바.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 3.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관한 사업
 -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업
 -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관한 사업
 -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사업
 - 마. 기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청소년 육성」 관련 사업
- 4.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 관련 정책개발
 - 나.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
 - 라.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 마. 여성·가족관련 기관·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 바. 성별영향평가 및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
-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중전의 제3조)제1항 중 “사회서비스원”을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3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사회서비스원”을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중 “제10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사회서비스원”을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사회서비스원 업무 담당 부서장”을 “대구행복진흥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사회서비스원 업무 담당 사무관”을 “대구행복진흥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대구행복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구행복진흥원에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허가 및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제15조(수익사업) 대구행복진흥원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중전의 제13조) 중 “사회서비스원의”를 “대구행복진흥원의”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운영 규정) 대구행복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구행복진흥원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고,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모든 재산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장(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u>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u>」 ----- ----- ----- ----- <u>규정하 고, 대구광역시 평생교육 및 청소 년활동의 진흥과 위기 청소년 보호 및 복지향상, 여성·가족 정책개 발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한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u>---
제2조(<u>사회서비스원</u>) 대구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 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 라 <u>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u>	제2조(<u>대구행복진흥원</u>) ----- ----- ----- ----- <u>따라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 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u>

현행	개정안
“<u>사회서비스원</u>”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신설>	<u>원</u>”-----. 제3조(사업) <u>대구행복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u>사회서비스원의 사업</u> 2.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나. 「평생교육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u>문해교육센터에 관한 사업</u> 다.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라.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마. 평생교육관련 통계조사 바.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3. <u>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u>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른 <u>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관한 사업</u>

현행	개정안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업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관한 사업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사업 마. 기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청소년 육성」 관련 사업 4.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 관련 정책개발 나.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 라.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현행	개정안
	<u>· 운영·보급</u> <u>마. 여성·가족관련 기관·단체</u> <u>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사</u> <u>업</u> <u>바. 성별영향평가 및 일·가정</u> <u>양립 지원 사업</u> 5. <u>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u> <u>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u> 6. <u>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u> <u>정하는 사업</u>
<u>제3조(성과계약) ①</u> 법 제21조에 따 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시장과 <u>사회서비스원</u> 원장(이하 “원 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 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계 약이 성립한다. ②·③ (생략)	<u>제4조(성과계약) ①</u> ----- ----- <u>대구행복</u> <u>진흥원</u> ----- ----- -----.
<u>제4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u>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u>경우</u>,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 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 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u>제3조제1항</u>에 따른 성과계약서 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u>제5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u> -- ----- ----- ----- . -- <u>경우</u> ---- ----- ----- ----- -. 1. <u>제4조제1항</u>----- -----

현행	개정안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u>제5조</u>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u>사회서비스원</u>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제6조</u>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① --- ----- <u>대구행복진흥</u> <u>원</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제6조</u> (생략)	<u>제7조</u> (현행 제6조와 같음)
<u>제7조</u>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u>제8조</u>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8조제3항</u> 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않은 경우	4. <u>제9조제3항</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u>제8조</u> ~ <u>제10조</u> (생략)	<u>제9조</u> ~ <u>제11조</u>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u>제11조</u> (회의결과 통보 등) 시장은 <u>제10조제2항</u> 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보하고, 원장은 통보 된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고려하 여 <u>사회서비스원</u> 을 운영하여야 한 다.	<u>제12조</u> (회의결과 통보 등) ---- <u>제11조</u> <u>제2항</u> ----- ----- ----- <u>대구행복진흥</u> <u>원</u> -----.
<u>제12조</u>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	<u>제13조</u> (간사 및 서기) ① ----- ----- <u>대구</u>

현행	개정안
는 <u>사회서비스원</u>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u>사회서비스원</u>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u>사회서비스원</u>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u>사회서비스원</u>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u><신설></u>	<u>행복진흥원</u> 업무 담당 부서장----- ----- <u>대구행복진흥원</u> 업무 담당 사무관-----.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u>대구행복진흥원의</u>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u>대구행복진흥원에</u>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허가 및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제15조(수익사업) <u>대구행복진흥원</u>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 <u>대구행복진흥원의</u> ----- -----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u>대구행복진흥원</u>----- --. 제17조(운영 규정) <u>대구행복진흥원</u>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u>대구행복진흥원의</u>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정관) ① 시·도 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시·도 서비스원에 제15조에 따른 임원의 후보자 추천과 제17조에 따른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원 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 ① 시·도 서비스원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제24조(조직과 정원의 운영) 시·도 서비스원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28조(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시·도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유형 등의 적정성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② 시·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시·도 및 시·도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업무 관련 공무원

④ 그 밖에 시·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시 조례

○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